「국어기본법」에 근거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이상규*

1. 서론
2. 본론
 2.1 외래어 개념과 관리의 문제
 2.1 「국어기본법」과 「외래어 표기법」
3. 「외래어 표기법」 구성과 내용
 3.1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3.2 제2장 표기 일람표
 3.3 표기 일람표 용례 분석
 3.4 표기 세칙
 3.5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4. 결론

1. 서론

한국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범들은 제정과 개정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같이 규범의 세부 명칭의 통일성을 잃었거나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도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다. 또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한국 어문 규범보다 늦게 발효된 때문에 관계 법령과 어문 규범 내용이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외래어 표기법'인지 '외국어 표기법'인지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범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사용자층에서는 많은 혼란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어문 규범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규범의 현실은 일반 사용자들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다. 띄어쓰기, 사잇소리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阿骨打'가 '아골타', '아구다', '아구타' 등으로 표기되는 것처럼 외래어 표기 규범이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어문 규범은 규범 자체가 앉고 있는 내용과 체계의 완결성도 중요하지만 규범의 관리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규범 관리의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지만 실무는 국립국어원이 담당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정책 주무 기관이었다가 2009년 이후 국어정책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로 이관됨으로서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현재 한국 어문 규범이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되지 않는 관리의 문제와 현행 규범의 내용이 법령과 차이를 보이거나 혹은 규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 때문에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전문용어의 관리를 위해 정부부처별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규범의 내용에서도 「외래어 표기법」에 예시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이 아직 외래어로 굳어지지 않은 외국어인 '캣(cat), 셋백(setback), 메르트(mert)' 등을 표준어의 사례로 들고 있어 '외래어 표기법'인지 '외국어 표기법'인지 분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외래어'는 우리말에 동화된 말이며, '외국어'는 아직 동화되지 않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표기문자에 따라 구분되지만 외국어를 한글로 전사한 경우 어디까지 우리말로 동화된 외래어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어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정한 것만 외래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외국어 단어를 우리말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일단 우리 글자로 적으면 이미 동화의 단계는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2]는 관점에서는 외국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기만 하면 모두 외래어로 받아드리는데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거침없이 외국어 음차표기를 대량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어 생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글로 표기된 외국어는 모두 외래어가 아니다. 외래어는 반드시 「표준어 사정 원칙」 총칙 제2장에 명시된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는 근거에 따라 국어심의회에서 사정한 것만을 외래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의 관습적인 방식으로 계속 어문 규범을 관리한다면 외래어를 용인하는 폭이 지나치게 넓어 우리말의 생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어문 규범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안고 있는 내용상의 문제점과 어문 규범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언어 사용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한국 어문 규범의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난 시점에서 한국어를 쉽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문 규범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적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논문이나 저서의 교류를 통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어에 대응되는 고유어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외국어를 차용하여 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한글로 표음한 모든 외국어를 외래어로 수용할 경우 한국어는 다시 이두와 같이 격조사나 어미만 남게 될 가능성도

2) 임홍빈,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한국 어문 규범의 이해』, 2008, 439쪽, 태학사.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사용자들이 간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시에 규범으로서 통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규범을 보완하고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본 론

2.1 외래어 개념과 관리의 문제

1) 외래어의 개념

외래어를 어떻게 정의지울 수 있는가? 한국 어문 규범인 「한글 맞춤법」에는 제1장 총칙 제3항에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표준어로서의 외래어의 대상은 「표준어 규정」 제1장 총칙 제2항에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한국 어문 규범에 따른 외래어의 개념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은 것을 국어심의회에서 사정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의 제1장 총칙 제1항에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심의회에서 사정한 것만을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논리이다. 규범상 외래어는 관리 절차에 따른 인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범의 내용상의 중요성 이상으로 관리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어문 규범에 따른 '외래어'의 정의는 이처럼 관리 방식에 따라 그 폭이 좌우된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은 것"을 의미한다면 구어(口語)로 말하는 외래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모순을 안게 된다. 또한 표준어로서의 외래어는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정 원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외래어를 『표준국

어대사전』 편찬자들이 임의로 올림말로 대폭 수용함으로써 외국어 음차표기나 외국어 혼종어가 대량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국 어문 규범이 정해 놓은 관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이지만 외래어를 관리하는 사정 원칙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부의 외래어의 관리는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어문 규범에서는 외래어의 형식적 개념을 규정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표준화된 단어를 규정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외래-어(外來語)[외 : --/웨 : --]「명사」『언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 버스, 컴퓨터, 피아노 따위가 있다. ≒들온말 · 전래어 · 차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외래어를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로 굳어진 '단어'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임홍빈(2008:435)은 "다른 언어에서 들여다 쓰는 단어 또는 어휘적 요소를 가리킨다."라고 하여 '단어'어나 '어휘'적 요소로 한정하고 있다. 외래어는 단어 단위를 차용하기도 하지만 단어의 일부나 심지어는 접사가 우리말과 혼효를 일으키기도 한다. 외래어는 '단어' 단위뿐만 아니라 접사나 구문 단위까지를 인정해야 한다. 외래어는 어휘적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래 어법까지를 포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민현식(1999:350)은 "외래어라는 용어를 종래처럼 어휘 차원으로만 쓰지 말고 외래 언의 음소, 어휘, 통사 차원까지 망라한 총체적 개념으로 보아 '외래어=외래 언어'로 넓게 보거나 '외래어의 차용' 대신 '외래 언어의 차용'이라는 표현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3)]

외래어의 수용 방식에 따라서는 1) 외국어 음성을 전사한 경우, 2) 번역한 경우, 3) 순화한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국 어문 규범에서는 주로 1)과 같은 음성 전사형 곧 표기법만 한정하고 있다. 민현식(1999:351-356)은 언어 단위를 기준으로 한 외래어 차용 방식을 음소, 형태, 어휘, 통사, 문자 차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차용 동기에 따라서는 '필요 외래어'와 '잉여 외래어'로 구

3) 민현식,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1999.

분하고 필요 외래어는 '생활(일반)외래어'와 '전문외래어'로 구분하며 잉여 외래어는 주로 위세적인 동기로 사용하는 예이다. 원어 유지 여부에 따라 원형외래어, 변형외래어, 신조(자생)외래어, 약어(acronym)외래어로 구분할 수 있다.[4] 지속성에 따른 유형으로는 '정착외래어'와 '일시외래어'로 구분하고 있다. 정착외래어는 시간이 지나 어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진 경우 '귀화어'라고 한다. 외래어의 차용방법에 따라 직접차용과 간접차용으로 구분된다.

외래어를 수용 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표음적 외래어', '표의적 외래어', '순화 외래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표음적 외래어는 일단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외국어를 원어 그대로 표기하거나 이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 '외국어 음차표기'(외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라고 할 수 있다. 원어 그대로 표기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한글로 표기한 경우 개인차이가 생겨나 표기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차이의 표기 통일을 기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말하자면 현행의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음차 표기법」이라고 말해야 옳은 것이다. '외국어 음차표기' 곧 외국어 원음에 가깝게 한글로 표기하는 단계를 차용의 일차 단계이다. 외래어로 사정하기 이전에 이미 외국어 음차표기형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외래어를 별도로 사정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외국어 음차표기'의 관리를 방치는 동안 외국어와 또 외국어와 우리말이 혼종을 이룬 신조어가 대량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어의 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외래어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이 도리어 대량으로 외래어를 양산하여 국어의 생태 환경을 더욱 불안전하게 압박하는 꼴이 되고 있다. 표의적 외래어는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 외국어를 한자어로 번역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elevator'를 '승강기-昇降機'(한국, 일본), '電梯'(중국)와 같은 예들이

4) 민현식,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1999, 362쪽. 민현식 교수는 원어 유지 여부에 따라 "원형외래어, 변형외래어, 신조(자생)외래어"로 구분했지만 '약어(acronym)외래어'를 추가하였다.

다. 규범상 표의적 외래어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다만 국어순화운동을 거치면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 외래어'로 바꾼 예들이 있다. '순화 외래어'는 의도적으로 우리말로 다듬은 외래어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인터넷(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에서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순화 외래어'를 보급하고 있다. '클러스터(cluster)/산학협력지구', '패셔니스타(fashionista)/맵씨꾼', '웹서핑(web surfing)/누리검색'과 같은 예들이다. 그런데 2007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외래어 이렇게 다듬어 쓰자』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다듬은 141개 용례 가운데 37개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림말로 실려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말로 굳어졌다고 하는 외래어는 불과 37개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잘못 사용되는 외국어를 순화하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이미 굳어진 외래어를 순화한다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에 실린 외국어도 정통 영어가 아닌 한국 토착 혼종영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이 외래어만 표기하는 규범이 아니라 외국어까지 한글로 표음하는 규범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속에는 알아볼 수 없는 숱한 외국어가 혼종어로서 우리말을 잠식하고 있다. '외국어 표기'와 '외래어 표기'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는 바이다.

2) 외래어 관리의 문제

「외래어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생활 및 지식정보를 이해하는데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외국어를 한글로 표음하거나 우리말로 순화하는 원리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외래어를 관리하는 어문 규범인 「외

5) 안정효, 『가짜 영어사전』, 현암사, 2006. 국적 불명의 한국식 영어 조어에 의해 유통되는 영어 음차표기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을 현실에 맞게 「외국어 표기법」으로 전환하고 그 가운데 우리말에 녹아 우리말의 일부가 된 '외래어'만 엄선하여 표준어의 일부로 삼는 보다 정밀한 한국어 어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래어 표기법」 제정의 기본 정신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외래어 표기법」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범이다.[6] 최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개방적인 규범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곧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이 국가별로 너무 미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인은 몰론 한국어를 배우는 초보자에게는 너무나 어렵다.

둘째, 한국어 규범이 그러하듯이 「외래어 표기법」도 실용주의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자가 보다 알기 쉽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통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18가지의 표기일람표와 21개국의 표기세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난해하고 부담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별 외래어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은 끝없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7]

셋째, 한국어의 생태 환경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의 실질형태소 부분을 다 차지하는 경우 한국어는 다시 이두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토착 나비의 한 변종인 'Adopaea'를 '아도피아'로 표기하지 않고 '꼬마팔랑'이라는 고운 우리말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표기할 때 사용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법」의 규범에 따라 표기한다고 하지만 현행 규범을 수용하면 결국

---

6) 한국 어문 규범의 일반 사용자는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재외 동포와 국내 국제결혼이주자와 해외의 한국어 학습자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7) 임홍빈,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한국 어문 규범의 이해』, 태학사, 2008, 453쪽. 태학사. "어떤 언어와 우리와의 접촉이 빈번해질수록 (21나-타)와 같은 세칙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외래어 표기법」의 세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어의 기반은 외래어나 외국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순화운동의 차원에서 〈외래어 다듬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별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

어문정책을 어떻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구현하는가에 따라 고유어를 대량 학살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 '노야기'를 '향유(香薷)'에, '함박꽃'을 '모란(牧丹)'에, '뱀풀'을 '금불초'에, '암눈비앗'을 '익모초(益母草)에 뜻풀이를 함으로써 고유 어휘가 자꾸 절멸하게 된다. 1988년 개정된 「표준어 규정」(제22항)이 "고유어 개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로 표준을 삼는다."라고 규정한 결과이다.

넷째, 「외래어 표기법」에 적용된 외래어를 어디까지 허용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난해한 문제이다. 국어심의회에서 사정한 것만을 외래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림말로 실린 것을 준거로 하려해도 외래어와 외국어 음차표기가 뒤섞여 있고 심지어는 규범집인 「외래어 표기법」에 예시한 예들조차도 외래어와 외국어 음차표기를 구분할 수 없다. 정부에서 발표한 『외래어표기 용례집』의 예들도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를 거친 자료일 뿐 국어심의회에 일일이 사정한 자료가 아니다.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외래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를 음차 표기한 외래어에 대한 사용자 연령별로 '인지율', '이해율', '사용률'을 조사하여 발표하거나 신문 등 공공매체에서의 외래어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외래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9)]

다섯째, 외래어 표기는 현행 한글 문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래어 표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나라마다 음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표기하는 일

8) 국립국어원, 『외래어 이렇게 다듬어 쓰자』, 태학사, 2007.
9) 國立國語研究所, 『公共媒體の外來語』, 日本 國立國語研究所, 2008.

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음소표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거나 고어를 사용하여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대처할 문제이다.

여섯째, 1991년부터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어기본법」 제정 이후 이들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언론 보도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를 통해 인명이나 지명 표기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문용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에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외래어 표기법」의 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어심의회를 통해 외래어를 어휘별로 사정하는 방식으로는 언어 변화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외래어와 전문용어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발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외래어 표기와 이를 사정하는 다원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일곱째, 외래어의 범위가 대폭 확충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전문용어(학술 용어), 약어, 외래어나 외국어의 요소와 결합한 신조어 등 우리말과 외국어의 혼종화의 현상은 날이 갈수록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60-70년대를 경계로 하여 외래어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국제적인 인적, 물적, 학술적 교류의 증가에 따라 '생활(일반)외래어'에 대한 정책에서 '전문외래어'의 정책으로 국가 정책 기반이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관리체계로 그 기본 시각을 옮긴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생활(일반)외래어'의 관리 정책은 위세적인 동기로 사용하는 '잉여 외래어'를 최소화하여 국어의 혼종화 현상을 막는데 초점이 놓였다면 '필요 외래어'가 급증하는 시대에 학술 전문용어나 외국 상품, 약어외래어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외래어 관리 정책의 큰 틀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어문 규범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외래어 표기법」을 상호 비교하여 어문 규범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의 진단과 함께 새로운 규범 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으로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외래어 및 전문용어, 신조어 등의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2.2 「국어기본법」과 「외래어 표기법」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4대 국어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시기가 각각 다르고 또 표준어를 규정하여 담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과도 일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규범과 법령 간에 용어 사용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내용의 오류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4대 국어 어문 규범 가운데 「외래어 표기법」을 중심으로 상위 법령인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과의 상호 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 기본법」은 한국어 사용 전반을 법률적으로 명시한 최고 상위의 법령으로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와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03호>로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령에 근거를 둔 시행령으로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2005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18973호>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2월 29일에 <대통령령 제20676호>로 개정되었다.

1) 관련 법률적 용어 문제

「국어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 (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범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어문규범'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현재까지 4대 규범으로 알려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에도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포함한다는 포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표준어 발음법'은 별도의 규범이 아니라 '표준어 규정'의 일부인데 이를 별도로 제시한 것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내용과 규범의 내용을 싣고 있는 "한국어문 규정집"과 일치하지 않는다. 향후 「국어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의 내용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구체적인 규범 내용을 국립국어원에서는 일괄하여 『한국 어문 규정집』으로 명명하고 있다.[10] 어문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 어문 규정집"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지만 상위 법령의 용어에 따라 "한국 어문 규범집"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2) 어문규범과 「표준국어대사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문규범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권한은 국어심의회에 있다.

---

10) 국립국어원, 『한국 어문 규범집』, 2007-1-70. 국립국어원.

외래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해온 어문 관리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준어로서의 외래어를 국어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싣게 되어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이 사전이 표준적인 외래어 표기와 그 뜻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침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이 사전에서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별하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올림말을 올려놓았다. '외국어 음차표기형, 신조어, 다듬은 말(순화어), 전문용어, 표준어로 규정되지 않은 방언, 개인어' 등은 분명하게 표준어가 아님에도 사전 편찬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올림말로 선정하여 실어두었다. 이미 이 사전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판단하는 잣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람하는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인지율', '이해율', '사용률'을 정밀하게 조사한 다음 미래지향적인 외래어의 관리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홈프로젝트, 홈패션, 홈팀, 홈터미널, 홈인, 넥(좁은 해협을 이르는 말), 네퍼(neper), 네페르툼(Nefertum), 네펜테스(nepenthes), 네프론(nephron)'과 같은 낱말이 외래어인가 외국어인가? 외래어라면 과연 표준어로 인정해야 하는가? 표준어로 인정되지 못할 외국어 음차표기 어휘가 대량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올림말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 그 반대로 '새내기, 모꼬지, 홈페이지, 네티즌, 꽃미남'과 같은 다듬은 말은 사용 빈도가 높지만 어떤 사전에서도 올림말로 실리지 않았다.

김정섭(2007)은 "십 년에 걸쳐 우리 말살이의 대중으로 삼겠다고 만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옛 한문 글귀, 일본 한자말, 따위와 보통 사람들의 삶과 거리가 먼 서양말까지 마구잡이로 올림말을 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그마치 3,000군데나 틀린 곳이 있다니 국어사전에 기대어 대중말을 쓴다는 말은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11] 이 모두 법령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

11) 김정섭, 「국어와 표준어와 외래어」『외솔회지』 제8집, 외솔회, 2007.

3)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의 법률적 지위와 역할

국제 교류가 확대되거나 특히 국제 경기나 국제 학술 대회 등의 행사 긴 간동안 아주 긴급하게 언론에 보도될 인명이나 지명 등의 외래어 표기법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제정 이전인 1991년부터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를 구성하여 외래어 표기를 심의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언론기관 간에 표기의 통일을 위한 조정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는 법률이 보장하는 심의 기구가 아니다. 그러나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반드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국어심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관행을 그대로 지속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의 법률적 지위가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현행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다면 법률적인 보장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사성이 있는 인명과 지명을 포함한 신조어 분야의 외래어 심의역할을 '정부언론공동심의회'가 담당함으로서 언론보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인명이나 지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문용어와 신조어가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서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에서는 이러한 전문 용어 표기의 통일 문제까지를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58개 영역의 전문 용어에 대한 표기 및 순화에 대한 영역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외래어 표기의 통일을 위해 문교부에서는 편수자료로 외래어 표기 용례,

지명, 인명 자료집을 보급해오다가 국립국어연구연에서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간행해 왔다.[12] 언론 보도 자료와 교과서 편찬 등에 외래어의 표기 통일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래어와 외국어 음차 표기를 구분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도리어 엄청난 외국어 음차표기가 유포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다.

인명과 지명의 표기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 역사적 변화에 따라 국경과 국가가 바뀐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지명이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쳐왔다. 또한 인명도 국적이 바뀐 경우에 태생 국가와 이민 국가 가운데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판단의 문제가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인명과 지명 그리고 시사적인 외국어 음차표기에 국한하여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를 중심으로 표기의 통일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별도의 세계 인명 및 지명 사전을 편찬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규범과 그리고 사전, 자료집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것을 최소화하는 세계 인명 지명 사전 편찬 계획을 국가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해 둔다.

4) 「국어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실태 조사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에 국어 사용자의 실태 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2조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항에 「국어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

12) 문교부, 『외래어 표기 용례, 일반 외래어』(편수자료 2-1), 1987.
문교부, 『외래어 표기 용례, 지명, 인명』(편수자료 2-2), 1987.
국어연구소, 『외래어 표기 용례집(일반용어)』, 1988.
국어연구소,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 1988.
국어연구소, 『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립국어연구원, 『외래어 표기 용례집, 지명』, 2002.
국립국어연구원, 『외래어 표기 용례집, 인명』, 2002.
국립국어연구원, 『포르투갈, 네덜란드,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 (국립국어원 2005-1-26). 2005.

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곧 국어사용 환경에 관한 내용은

>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국민들의 사용 실태와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 영역별 사용 실태와 신문, 방송,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사용실태를 조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006년 4월에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신문이나 정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인지율 조사 결과 18.5%로 나타났다. 2011년 2월 28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 외국어를 한국어로 표기할 때 사용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규범을 계속 수용한다면 우리말 속에는 외국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 넥슨모바일이 선보인 "메이플스토리 시그너스 기사단".
> 넥슨모바일(대표 이승한)은 인기 모바일RPG '메이플스토리 시그너스 기사단'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T스토어와 올레마켓을 통해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매경게임진 김상두기자 sdkim@mkinternet.com]기사입력 2011.02.28 14:14:56 | 최종수정 2011.02.28 14:45:28

'넥슨모바일, 메이플스토리, 시그너스, 모바일RPG, 안드로이드, 버전, T스토어, 올레마켓'과 같은 낱말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어느 정도나 될까?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에 ②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범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의 규범에 의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외래어와 외국어가 범람하고 있어서 한국어의 생태가 매우 불완전한 상황이다. 국가의 어문 정책이 국어의 언어 기반을 절멸의 위기로 몰아가서는 안 될 일이다.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실태조사가 아니라 국어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어실태 조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어문규범 영향 평가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에서는 「국어 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범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대통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어문규범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도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어문규범 영향 평가는 매우 밀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연령별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이해율, 인지율, 사용률 등의 다면적인 조사를 통해 외래어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법령에 따라 현행 어문 규범이 안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어문 영향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법령과 규범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신속하게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외국어 및 한자 사용 규정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1조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규를 무시하고 외국어는 물론이거니와 영문 로마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교과부 : 프런티어 페스티벌, HRD, R&D,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외통부 : WTO Public Symposium
국방부 : BTL, Foal Eagle(F/E) 훈련
문체관광부 :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ze), 스타프로젝트
환경부 : e-Echo Korea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법령을 근거로 하여 비판하여도 정부부처부터 이를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한글로만 적는다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일은 아니다. 내용의 전달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한글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특히 논문을 작성하거나 응축된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괄호 안에 표시하거나 첨자의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절충적인 방안도 강구해 법령상 권위를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외래어 표기법」과 신조어

자국어의 일부가 된 새로운 단어는 고유어의 결속을 통해 혹은 외래 언어적 요소들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게 된다. 자국어의 조어 생산력은 자국 문명과 문화 발전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조어의 생산 방식은 거의 외국어의 음차표기형 끼리 결속시키거나 우리말의 일부를 결속시키는 매우 불안전한 방식으로 새로운 말들이

생산되고 있다.

신조어의 조어 양식은 고유어의 결속이나 한자어의 결속, 외국어의 결속, 고유어와 한자어 혹은 외국어의 결속 등의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외국어의 어휘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높은 생산력을 보이고 있다.

거울폰(거울+phon)
공기캔(공기+can)
구글한다(Google+하다)

가제트족(gadget+族)
갤러리촌(gallery+村)
건실맨(健實+man)
건테크(健(康)+tech(nology))

갭이어(gap year)
걸리시 마케팅(girlish marketing)
골프폰(golf phone)

생까기(생+까기)

신조어의 생산 양식은 이보다 훨씬 복자하지만 외래어 혹은 외국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전통적인 국어의 조어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유어나 한자어의 요소와 외래어 혹은 외국어의 요소를 혹은 외래어나 외국어의 요소들 결속시켜 생산하는 신조어는 우리말 기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조어 관리에 대한 문제는 속수무책의 상황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부터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22,000여개의 다듬은 말을 신조어로 공급하고 있다. 2004년 7월 5일부터 '모두가 함께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다듬은 말도 일종의 신조어이다. 그러나 이들 신조어 관리에 대한 법령이나 규범에 어떤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 1항에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신조어가 '표준어'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규범의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인터넷 통신언어와 함께 신조어는 어문 규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8) 전문 용어 관리 체계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문 용어는 주로 외국어 원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어 기본법」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에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에는 매우 분명한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을 규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이행을 위한 아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동 법령이 발효된 이후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도 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여러 학문 분야별 밀려들어 오는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학술용어, 상품명, 약어 등)를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원어 그대로 음차표기를 하여 사용함으로써 맞춤법, 띄어쓰기, 표기법 규범에 어긋날뿐더러 표기법이 통일이 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럽다. 정부의 지식 정보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문용어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는 매우 시급하게 관심을 기울려야 할 분야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전문용어 관리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 「국어 기본법」 제17조의 규범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중앙행정 기관별 전문용어 표준화와 체계화는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부처별로 구성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림-12]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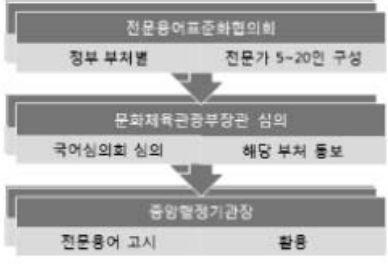

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 절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별로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한다.

3) 중앙행정 기관의장의 확정안 고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범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정부 부처가운데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처는 거의 없다.

3. 「외래어 표기법」 구성과 내용

「외래어 표기법」은 전체 4장인데 제1장은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은 표기 일람표, 제3장은 표기 세칙, 제4장은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은 전체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항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1장의 표기 기본 원칙에 '외래어'의 개념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3항에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과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 1장 총칙, 제2항에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은 것 가운데 따로 사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래어를 전면적으로 따로 사정한 적이 거의 없다. 다만 1991년부터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에서 주로 인명이나 지명 등 시사적인 내용을 토론하여 언론사를

중심으로 통일된 표기의 기준을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아진 자료를 국립국어원에서 『외래어표기용례집』으로 몇 차례 간행한 바가 있다.

(1)
가제09(<독>Gaze) 명 =거즈(gauze).
거즈(gauze) 명 가볍고 부드러운 무명베. 흔히 붕대로 사용한다. ≒가제09(Gaze).

(2)
옥도-정기(沃度丁幾)[-또--] 명 『약학』 요오드, 요오드화칼륨 따위를 알코올에 녹인 용액. 어두운 붉은 갈색으로 소독에 쓰이거나 진통, 소염 따위에 쓰이는 외용약이다. '**요오드팅크**'로 순화. ≒옥정04(沃丁).
요오드(<독>Jod) 명 『화학』 할로겐족 원소의 하나. 광택이 있는 어두운 갈색 결정으로 승화하기 쉬우며, 기체는 자주색을 띠며 독성이 있다. 바닷말에 많이 들어 있으며 의약품이나 화학 공업에 널리 쓴다. 원자 기호는 I. 원자 번호는 53, 원자량은 126.9045. ≒아이오딘·옥도04(沃度)·옥소02(沃素).
아이오딘(iodine) 명 『화학』 =요오드.
옥도04(沃度)[-또] 명 『화학』 =아이오딘.
옥소02(沃素)[-쏘] 명 『화학』 =아이오딘.
요오드팅크 미 등재 어휘

(3)
라벨01(label) 명 『경제』 「1」종이나 천에 상표나 품명 따위를 인쇄하여 상품에 붙여 놓은 조각. 분류 번호, 취급상의 주의 사항, 제품의 크기, 가격 따위를 써넣기도 한다. ≒레이블·**레터르**「1」.「2」파일의 관리나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파일에 붙이는 특별한 항목 표시 기록.
레이블(label) 명 『경제』 =라벨01(label)「1」.
레테르 미 등재 어휘.

위의 예 (1)-(3)은 국어 규범에 근거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외래어

의 몇몇 사례이다. (1) 가제(Gaze)와 거즈(gauze)는 독일식 표기냐 미국식 표기냐에 따라 두 개의 올림말을 표준어로 싣고 있다. 동일한 대상이 이처럼 국가별 표기법에 따라 각각 달리 표기하여 올림말로 삼아 사전에 다 싣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제3장 표기 세칙 제11절 루마니아 어의 표기 제1항에 'septembrie(셉템브리에)'로 제14절 노르웨이 어의 표기 제1항에 'september(셉템베르)'로 표기 사례를 들고 있다. 'Sep · tem · ber[septémbər]'를 이처럼 나라마다 외래어 표기 세칙에 따라 달리 표기한 단어를 모두 외래어로 인정한다면 우리말 사전이 어떤 모습이 될까?

(2)의 '옥도정기'와 '옥도', '옥소'는 일본식 한자 조어형이고 독일식 발음인 '요오드'와 미국식 발음인 '아이오딘'이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어로 만든 '요오드팅크'는 아예 사전에 실리지도 않았다. (3)에서 일본식 외래어인 '레테르'는 '라벨'의 뜻풀이에까지 사용하면서 올림말에는 빠져 있다. 'la · bel'의 영국식 발음인 [léibəl]과 '라벨'이라는 발음 모두를 외래어로 인정하여 사전의 올림말로 인정하고 있다.

제1장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에서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3항에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 1장 총칙, 제2항에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정의 기준이나 원칙은 없다. 그리고 국어심의회에서 사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정한 사례가 없다.

앞으로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넘쳐나는 전문용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듯한 외래어 관리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게놈'(<독>Genom)이 미국식으로는 '지놈(genome[dʒíːnoum])'으로 표기되면 '게놈'과 '지놈'이 서로 충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 제1항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라는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2장 자모 제4항에 제시된 24자모로 한정하는 규정이지만 실재로는 [붙임 1]에 나타나는 16자를 더 포함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현재 외래어 표기는 붙임 16자를 합쳐 40자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는 규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2장 제4항 규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붙임 1]의 자음도 모두 단자음이며 모음 가운데 'ㅐ, ㅔ, ㅚ, ㅟ'는 단모음화된 음소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4항의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외래어 표기 규정」에 삽입한 이유는 된소리 표기를 줄여서 우리말을 발음을 보다 부드럽고 아름답게 하려는 취지나 의도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는 반드시 원음주위에 충실해야 할 이유도 없다. 예를 들어 '中國'을 '뭥궉'으로 표기한 세종대왕의 슬기처럼 우리말 음운체계의 방법으로 표기하는 기본 원칙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차츰 외래어의 원음주의 표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외래어에 대한 원음주의 표기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어의 치간음(θ), 순치음(f, v)의 표기 문자를 훈민정음 문자를 재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랜지'를 미국식 발음으로 [ɔ́ːrindʒ]나 영국식 발음으로 [ɑ́rindʒ]로 왜 표기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외국어의 원음에 충실하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문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글표기가 전 세계의 언어를 표기하는 국제음성부호가 아니다. 새로운 음소를 하나 더 만들 경우 모든 출판물들의 출판 시스템의 변화와 국제 문자자판의 코드 통일 등 엄청난 재정적 분담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로 휩쓸릴 위험이 따른다. 다만 된소리 표기의 문제는 동남아시아 3개국 표기세칙인 말레이인도네시아 어의 표기, 타이 어의 표기, 베트남 어의 표기에서는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관용화된 일본 외래어 표기에도 된소리표기를 용인하고 있다. 앞으로 동구

어와 러시아어에서 된소리 표기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제5항의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는 규정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인정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해놓고는 어디에도 없다. 국가 규범의 신뢰성과 공신력의 문제와 관계되는 일이다.

(4)

깡통(-筒) 명 「1」 양철을 써서 둥근기둥 꼴로 만든 통조림통 따위의 통.「2」 아는 것이 없이 머리가 텅 빈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can+통(筒)】

빠꾸(〈일〉bakku) 명 「1」 차량 같은 것을 뒤로 물러가게 함. '뒤로', '후진04'으로 순화.「2」물건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냄. '퇴짜'로 순화. 【<back】

리어-카(▼rear car) 명 자전거 뒤에 달거나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둘 달린 작은 수레. '손수레'로 순화. ≒후미차.

사시미02(〈일〉sashimi[刺身]) 명 → 생선회.

사지02 명 『수공』→ 서지06(serge).

사쿠라(〈일〉sakura[櫻]) 명 「1」다른 속셈을 가지고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 특히 여당과 야합하는 야당 정치인을 이른다. '사기꾼', '야바위꾼'으로 순화.「2」→ 벚꽃「1」.「3」『운동』→ 벚꽃「2」.

와이-셔츠(▼←white shirts) 명 양복 바로 안에 입는 서양식 윗옷. 칼라와 소매가 달려 있고 목에 넥타이를 매게 되어 있다. ≒와이샤쓰.

바께쓰(〈일〉byaketsu) 명 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단 통. '들통02', '양동이'로 순화. 【<bucket】

(4)의 예들은 관용화된 일본식 외래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림말로 실려 있는 예들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에 규정된 된소리를 쓰지 않는 다는 원칙에도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5항의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그 범위와 용례를 선정하여 사전에 올려야 할 것이다.

3.2 제2장 표기 일람표

제2장 표기 일람표는 국제음성부호(IPA)를 비롯하여 18개 국가어의 자모 대조표를 제시하고 있다. 1995년 이후에 동남아시아 및 포르투갈 등 외래어 표기 일람표를 추가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 “외래어는 표 1-13에 따라 표기한다.”라고 하여 규범 자체의 오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외래어는 표 1-18에 따라 표기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도표-13] 표기 일람 표

표	표기 일람 표	제정시기
[표-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7)
[표-2]	에스파냐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7)
[표-3]	이탈리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7)
[표-4]	일본어의 가나와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7)
[표-5]	중국어의 주음 부호와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7)
[표-6]	폴란드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교부 고시 제1992-31호(1992. 11. 27)
[표-7]	체코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교부 고시 제1992-31호(1992. 11. 27)
[표-8]	세르보크로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교부 고시 제1992-31호(1992. 11. 27)
[표-9]	루마니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교부 고시 제1992-31호(1992. 11. 27)
[표-10]	헝가리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교부 고시 제1992-31호(1992. 11. 27)
[표-11]	스웨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화 체육부 고시 제1995-8호(1995. 3. 16)
[표-12]	노르웨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화 체육부 고시 제1995-8호(1995. 3. 16)
[표-13]	덴마크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화 체육부 고시 제1995-8호(1995. 3. 16)
[표-14]	말레이인도네시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2004. 12.20.)
[표-15]	타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2004. 12.20.)
[표-16]	베트남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2004.

		12.20.)
[표-17]	포르투갈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2호(2005. 12.28.)
[표-18]	네덜란드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2004. 12.20.)
[표-19]	러시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2004. 12.20.)

제2장 표기 일람표는 크기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표-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는 발음 전사(Pronunciation transcription) 기준이다. 이 국제 음성 기호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음성 부호 알파벳(phonetic alphabet(symbol))이다. 사실 [표-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는 발음 전사 기준만 있으면 국가별 표기 일람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만 인명이나 지명 등 해당 국가의 사전에 등재 되지 않은 어휘의 경우도 구글을 비롯한 음성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사 표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표-2]에서 [표-19]까지 국가별 표기 일람표는 자모 전사(Alphabet transcription) 기준이다. 앞의 발음 전사 기준만 있으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 외래어를 표기할 수 있다. 발음 전사 기준과 국가별 자모 전사 기준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e/는 무려 7-8종의 발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자모 전사 방법에서는 이런 변이 환경을 모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외래어 표기법이 무척 난해해 질 수밖에 없다.

제3장 표기 세칙에 제1절, 영어의 표기, 제2절 독일 어의 표기, 제3절 프랑스 어의 표기가 제2장 표기 일람표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만 있으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원칙을 깨뜨리고 국가별 표기 세칙을 만들어 나가면서 외래어 표기법은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도 그리스 어 표기법 등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86년도에 재정한 [표-5] 중국어의 주음부호와 한글 대조표도 한어 병음 자모 대조표로 전환해야 한다. 1992년도에 제정한 [표-8] 세르보크로아트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는 이젠 유명무실해 졌다. 보스니아와 세르보와 크로아티아로 국가 분열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물론 아직 이들은 세르보아 어를 기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 규범이 이를 그대로 받아 드려야 하는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복수 공통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여러 국가나 구 소련에서 분리된 국가들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을 고려한다면 외래어 표기법이 수 백 가지가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국가별 표기 일람표는 자모 전사로 계속 표기법을 만들어 나갈 경우 이슬람 계 국가의 외래어 표기 문제나 고전어인 라틴 어의 경우 고전 라틴어와 스콜라 라틴어 가운데 무엇을 기준을 할 것인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명은 시대별 지배 족 이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외래어 표기법은 사용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3 제2장 표기 일람표 용례 분석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는 5차례에 걸쳐 국가별 외래어 표기 대응표를 정부 고시로 발표하였다. 1986년 1월 7일에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를 비롯한 4개 국가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발표하였다(문교부 고시 제 85-11 호). 1992년 11월 27일 동구의 폴란드를 비롯한 5개국의 국가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발표하였다(문화부 고시 제 1992-31호). 1995년 3월 16일에는 북유럽의 노르웨이를 비롯한 3개 국가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발표하였다(문화 체육부 고시 제 1995-8호). 2004년 12월 20일에는 동남아 3개 국가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발표하였다(문화 체육부 고시 제 2004-11호). 2005년 12월 28일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러시아 3개 국가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발표하

였다(문화 체육부 고시 제 2005-32호).

이 자모 대조표는 상대 국가의 음소에 한글 음소를 대조한 자모 전사 방식이다.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의 음운변화의 원리까지를 고려한 매우 친절한 표기법이기는 하지만 영어, 독일 어, 프랑스 어와 같이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만 있어도 충분히 발음 전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모 전사라는 이중의 전사 기준을 만든 것이 문제이다. 물론 원음주의에 따른 국가별 표기를 보안할 필요는 있다. 제3장과 같은 간략한 표기 세칙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도표-14] 표기 일람 표의 용례와『표준국어대사전』미등재 어휘

표	표기 일람 표	용례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어휘수
[표-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없음	없음
[표-2]	에스파냐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45개	1개
[표-3]	이탈리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50개	17개
[표-4]	일본어의 가나와 자모와 한글 대조표	없음	없음
[표-5]	중국어의 주음 부호와 자모와 한글 대조표	없음	없음
[표-6]	폴란드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99개	5개
[표-7]	체코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90개	2개
[표-8]	세르보크로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72개	0개
[표-9]	루마니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53개	11개
[표-10]	헝가리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80개	0개
[표-11]	스웨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66개	20개
[표-12]	노르웨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164개	10개
[표-13]	덴마크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144개	13개
[표-14]	말레이인도네시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92개	14개
[표-15]	타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82개	3개
[표-16]	베트남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100개	1개
[표-17]	포르투갈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94개	10개
[표-18]	네덜란드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107개	16개

[표-19]	러시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96개	31개
총계		1,434개	154개

[도표-2]에서처럼 표기일람표에 예로 든 용례가 한글로 표기된 경우 모두 표준어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림말로 실려 있는 용례는 매우 적은 편이다. 총 1,434개 가운데 154개만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림말로 실려 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 어를 포함하여 일본어와 중국어의 용례는 단 한 개도 실려 있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림말로 실려 있는 몇몇 용례를 살펴보자.

1) 전문용어, 인명, 지명

야마03(〈에〉llama) 명 『동물』 낙타과의 포유류. 야생의 과나코를 가축화한 종으로 낙타와 비슷하나 훨씬 작아서 어깨의 높이는 1.2미터 정도이고, 몸의 길이는 2~2.4미터이며, 털은 검은색·갈색·흰색이다. 몸과 다리가 길다. 귀는 길고 끝이 뾰족하며 등에 혹이 없다. 타거나 짐을 싣고 털은 직물, 가죽은 구두의 원료로 쓰며 고기는 식용한다. ≒라마02·아메리카낙타.(Lama glama)

캄파넬라02(Campanella, Tommaso) 명 『인명』 이탈리아의 철학자·사상가(1568~1639). 나폴리의 독립 운동에 가담하여 27년간 투옥되었다. 감각을 인식의 원천으로 하여 범신론적 자연관을 설명하였다. 저서에 ≪태양의 나라≫, ≪진정 철학(眞正哲學)≫ 따위가 있다.

포즈난(Poznań) 명 『지명』 폴란드 중서부, 바르타 강(Warta江)에 면하여 있는 항구 도시. 교통 요충지로 기계, 자동차 따위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야마, 캄파넬라, 포즈난'과 같이 전문용어나 혹은 인명이나 지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외국 전문용어, 인명이나 지명을 모두 외래어 표기에 따라 한글로 적은 것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면 한국어의 어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 어휘에 대한 인지율, 이해율, 사용률의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표준어로 등재해할 어휘와 전문용어와 외국 인명 지명은 분명하게

별도로 관리해야 할 문제이다. 일부 사용 삭제 사용률이 비교적 높은 어휘는 우리말로 순화하는 공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순화된 외래어를 언중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외래어 동음어

아래의 예처럼 외국어를 모두 한글로 표기했을 경우 외래어의 동음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포트01(phot) 의 『물리』 조명도의 시지에스(CGS) 단위. 1포트는 1㎠당 1루멘의 광속을 받는 면의 조명도로, 1만 럭스(lux)에 해당한다. 기호는 Ph.
포트02(port) 명 =포트와인.
포트03(port) 명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가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컴퓨터의 연결 부분. 이것을 통하여 프린터나 전용 회선, 모니터 따위의 주변 장치와 연결한다.
포트(pod) 폴란드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사전에 미 등재)

빅토리아01(Victoria) 명 『문학』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그리스 신화의 니케에 해당한다.
빅토리아02(Victoria, Tom s Luis de) 명 『인명』 에스파냐의 작곡가(?1548~1611). 마드리드 근교의 수도원 사제 겸 음악가로, 미사곡·모테토 따위의 교회 음악을 많이 남겼다.
빅토리아03(Victoria) 명 『인명』 영국의 여왕(1819~1901). 하노버 왕조의 마지막 영국 군주로, 영국의 전성기를 이루고,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확립하였다. 재위 기간은 1837~1901년이다.
빅토리아04(Victoria) 명 『지명』 인도양, 세이셸 제도의 마헤(Mahé) 섬에 있는 항구 도시. 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로서 병원과 사범 대학을 비롯한 현대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세이셸의 수도이다.
빅토리아05(Victoria) 명 『지명』 캐나다 밴쿠버 섬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목재, 고무, 통조림 따위를 수출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주도(州都)이다.

코크(Kock) 스웨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사전에 미 등재)
코크(Cork) 명 『지명』아일랜드 남부, 리 강(Lee江) 하구에 있는 항구 도시. 이 나라 제이의 도시이며, 상공업 중심지이다. 아일랜드 독립 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유럽 대륙과 국내 각 항구를 적출하는 농산물 거래소가 많다.

'포트'처럼 외국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한 경우 엄청난 양의 동의가 생겨날 것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어휘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면 한국어의 어휘 생태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포트(pod)는 폴란드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에 실린 어휘이지만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코크'의 경우 사전에는 아일랜드 항구 도시 이름만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웨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에 실린 '코크(Kock)'에 대한 내용은 스웨덴 어 사전을 참고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

3) 외래어 동의어

외래어 표기 일람표의 용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국가 간의 동의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영어의 제로(zero)를 한글로 표음한 것을 외래어로 인정하는 경우 라틴어에 기반을 둔 모든 인구어의 국가별 동의어형 '제로'가 모두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는 말이다. 셉템버(september)를 노르웨이 어와 덴마크 어의 표기 용례로 들고 있다. 월(月)을 표시하는 외국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한 것을 외래어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외래어 동의어 처리 문제만 하더라도 외래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제로02(zero) 명 「1」=영14(零)「1」.「2」전혀 없음.
제로(zero) 폴란드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사전에 미 등재)

피크(peak) 명 「1」어떤 상태가 가장 고조될 때. '절정03', '절정기', '한창01'으

로 순화.「2」『공업』어떤 양이 가장 많아지는 순간의 값.
피크(fik) 체코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사전에 미 등재)

킬로그람(kilogram) 루마니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사전에 미 등재)
킬로그램(kilogram) 의 국제단위계에서 질량의 단위. 사방 10cm인 물의 질량에서 유래하였으나, 현재 국제 도량형국에 보관된 킬로그램원기의 질량으로 정의한다. 1킬로그램은 1그램의 1,000배이다. 기호는 kg. ≒킬로「1」.

탁시(taxi) 루마니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사전에 미 등재)
택시(taxi) 명 요금을 받고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영업용 승용차.

섹스(sex) 스웨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사전에 미 등재)
섹스(sex) 덴마크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사전에 미 등재)
섹스(sex) 명 「1」=성07(性)「2」.「2」=성07「3」.

셉템베르(september) 노르웨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사전에 미 등재)
셉템베르(september) 덴마크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사전에 미 등재)
셉템버(september) 영어의 표기(사전에 미 등재)

호프01(〈독〉Hof) 명 한 잔씩 잔에 담아 파는 생맥주. 또는 그 생맥주를 파는 맥줏집.
호프(hop) 덴마크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사전에 미 등재)

4) 차용 외래어의 처리 문제

최근 세계의 언어가 마구 뒤섞이고 있다. 특히 국가 간의 외국어가 차용되어 자국의 발음대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표기하느냐에 따라 현행 표기법에 따른 표기를 한다면 동의 외래어형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독일식 외래어 '루터'를 스웨덴 어 자모와 한글 대조 용례에 '루테르'로 표기하여 실어두고 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미국에서

는 '다스터옙스키'가 된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마키아벨리'처럼 전 세계 인명과 지명이 차용국마다 철자가 달라지거나 발음이 달라지면 동일한 인명이나 지명이 수십 가지 이상으로 표기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서양 고대사를 연구할 경우 국경이나 국가가 달라진 고대지명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루터(Luther, Martin) 명 『인명』독일의 종교 개혁자·신학 교수(1483~1546). 1517년에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마구 파는 데에 분격하여 이에 대한 항의서 95개조를 발표하여 파문을 당하였으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종교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522년 비텐베르크 성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완역하여 신교의 한 파를 창설하였다.
루테르((Luther) 스웨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용례.(사전에 미 등재)

도스토옙스키(Dostoevsky, Fyodor Mikhailovich) 명 『인명』제정 러시아의 소설가(1821~1881).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대표자로, 잡지 ≪시대≫와 ≪세기≫를 간행하면서 문단에 확고한 터전을 잡았다. 인간 심리의 내면에 깃들인 병적이고 모순된 세계를 밀도 있게 해부하여 현대 소설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작품에 <가난한 사람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따위가 있다.
다스터옙스키(Dostoevsky)[dὰstəjéfski, dὰs-] 미국
도스토옙스키(Dostoevsky)[dɔ́stɔiéf-] 영국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명 『지명』러시아 시베리아 동남부, 동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동쪽 종착점이며 러시아 함대의 기지가 있다. 기계·차량·조선·제재·제유 따위의 공업도 발달하였다. ≒해삼위.
블래디바스타크(Vladivostok) [vlæ̀divástɑk, -vəstɑ́k] 미국
블래디보스토크(Vladivostok) [-vɔ́stɔk] 영국

마키아벨리(Machiavelli, Niccol) 명 『인명』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외교가

・역사학자(1469~1527).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구별된 고유의 영역임을 주장하는 마키아벨리즘을 제창하여 근대적 정치관을 개척하였다. 저서에 ≪로마사론≫, ≪군주론≫ 따위가 있다.
매키아벨리(Ma・chi・a・vel・li) [mæ̀kiəvéli] 미국

피사02(Pisa) 명 『지명』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에 있는 도시. 기원전 2세기부터 발달한 항구 도시로 사탑(斜塔), 성당이 유명하다. 면직물, 기계, 유리 공업이 활발하다.
피저(Pi・sa)[pí：zə] 미국

프란시스쿠(Francisco)(포르투갈)

'가제'는 영어 [gauze]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결과이다. 어원으로 독일말 'Gaze'을 표기 기준으로 할 것이냐 영어식으로 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분명 일본식 '가제'를 버젓이 올림말로 실어 놓고 뜻풀이는 '거즈'로 회전문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간데라'는 밤낚시를 갈 때 석유를 분사식으로 섬유망에 불을 밝히는 조명기구이면서, 한편으로는 조명도의 단위를 뜻하는 어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사전에서는 '간데라'의 어원을 일본어 'kandera'로 '조명기구'가 아닌 조명의 밝기 단위로만 인정하고 '촉', '촉광'으로 순화해야 한다고 한다.

5) 국가별 용례의 오류

'탈라'는 인도의 음악 용어인데 스웨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의 용례로 되어 있다. 스웨덴 차용어일 가능성도 있지만 적절한 용례라고 볼 수 없다. '레프'도 불가리아어의 화폐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체코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의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빌레트'는 러시아 어인데 루마니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의 용례로 실려 있다. '요아킴'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노르웨

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의 용례로 실려 있다.

> **탈라(〈산〉tāla)** 명 『음악』인도 음악에서 쓰는 용어의 하나로, 리듬 주기 또는 리듬의 기본이 되는 박절적(拍節的) 리듬 주기의 종류. 1~8박의 부분적 박절을 다양하게 결합하여 만드는 리듬 주기의 유형을 이른다.
> (체코 어)
> **레프01(〈불〉lev)** 「의존명사」불가리아의 화폐 단위.
>
> **빌레트(〈러〉bilet)** 명 『북한어』'표04(票)'의 북한어.
>
> **요아킴(Joachim Floris)** 명 『인명』이탈리아의 신비주의 사상가(?1130~1202). 세계의 역사를 아버지·아들·성령에 대응하는 셋으로 구분하고, 1260년에는 제3기가 시작한다고 하는 천년 왕국 사상을 설파하여 중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루마니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의 용례에서는 '몰도바'로 되어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몰디비아'로 등재되어 있어 외래어 표기가 사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스웨덴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의 용례에는 '에릭손'으로 되어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에릭슨'으로 등재되어 있다.

> **몰다비아(Moldavia)** 명 『지명』루마니아 동북부 프루트(Prut) 강과 카르파티아 산맥 사이에 있는 지역의 옛 이름. 14세기 중엽 몰다비아 인에 의하여 후국(侯國)이 건설되었으며 그 후 터키 및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현재는 루마니아와 몰도바 공화국이 되었다. ≒몰도바01.
> **에릭슨(Ericsson, John)** 명 『인명』스웨덴 태생의 미국 기술자(1803~1889). 선박용 스크루의 실용화와 장갑선의 건조 등 선박 개량에 공헌하였다.

포르투갈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의 브라질어 용례는 (브)를 표시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으나 이를 누락하한 예로 '나탈(Natal)', '올리베이라(Oliveira)',

'디아스(Diaz)' 등이 있다.

6) 원음과의 차이

외래어 표기법은 원음주의를 지키되 한글 자모로 우리말의 음운 체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렌지(orange)'를 왜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로 한때 문제가 제기도기도 하였다. 관습화된 외래어의 표기를 원음주의로 되돌리는 일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명이나 지명은 가급적이면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해 주어야 한다.

현지 원음과 차이를 보이는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에이콥센(덴마크)
야콥센(Jacobsen, Jens Peter) 명 『인명』 덴마크의 소설가(1847~1885). 무신론의 입장에서 자연과 인간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에 <닐스리네> 따위가 있다.

케피티에어(덴마크)
카페테리아(〈에〉cafeteria) 명 손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식탁으로 날라다 먹는 간이식당.
콜세트(덴마크)
크로세트(crosset)
그룬트빅(덴마크)
구룬트비(Grundvig)
뭉키(덴마크)
뭉크02(Munk, Kaj Harald Leininger) 명 『인명』덴마크의 극작가·목사(1898~1944). 종교계·사상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군 침공 때에는 반나치스 운동의 국민적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희곡 <닐스 엡베센(Niels Ebbesen)>을 썼다. 나치스에 의하여 암살되었다.
키에르콕(덴마크)
키르케고르(Kierkegaard, S ø ren Aabye) 명 『인명』덴마크의 철학자(1813~

1855). 실존의 문제를 제기하여 실존 철학과 변증법 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저서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의 개념≫ 따위가 있다.
이드리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이드리스(Idris)
가멜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가몰란(gamelan)

외래어 표기법이 아무리 정교하다고 하더라도 언어 간의 음운체계의 차이로 원음에 충실하게 표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Jacobsen, Jens Peter을 '에이콥센'(덴마크)과 '야콥센'(영어) 식으로 표기하는 국가별 간접차용어를 외래어 표기법으로 각기 다르게 표기하는 일은 엄청난 혼란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3.4 표기 세칙

외래어 표기법 제3장 표기 세칙은 현재 21개 국가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절 영어, 제2절 독일어, 제3절 프랑스 어의 표기는 제2장의 표기일람표에는 제외되어 있다. 종래의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였지만 다시 철자 전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세칙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된다.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는 음성부호를 한글 자모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전사(Phonetic transcription) 방식이다. 그런데 표기 세칙은 다시 자모 전사법이므로 일관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콘텐츠(contents)'는 자모 전사 방식이라면 음성전사 방식으로는 '컨텐츠'에 가깝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올림말은 '콘텐츠'로 고정해 두었으나 일반 대중들은 '컨텐츠'를 선호하고 있다.

제4절에서 21절까지 17개 국가의 외래어를 표기할 경우 대상국가와 한국어의 음절구조의 차이 때문에 미시적인 표기 세칙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러나 이러한 표기 세칙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경우 일반 언중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 인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표-15] 표기 세칙의 용례와『표준국어대사전』미등재 어휘

절	표기 세칙	용례	표준국어대사전 미 등재 어휘수
제1절	영어의 표기	94개	51개
제2절	독일어 표기	31개	7개
제3절	프랑스 어의 표기	59개	5개
제4절	에스파냐 어의 표기	25개	0개
제5절	이탈리아 어 표기	38개	5개
제6절	일본어의 표기	7개	6개
제7절	중국어의 표기	0개	0개
제8절	폴란드 어의 표기	26개	2개
제9절	체코 어의 표기	16개	1개
제10절	세르보크로아트 어의 표기	10개	0개
제11절	루마니아 어의 표기	15개	0개
제12절	헝가리 어의 표기	10개	0개
제13절	스웨덴 어의 표기	46개	4개
제14절	노르웨이 어의 표기	62개	4개
제15절	덴마크 어의 표기	65개	2개
제16절	말레이인도네시아 어의 표기	62개	3개
제17절	타이 어의 표기	30개	1개
제18절	베트남 어의 표기	16개	0개
제19절	포르투갈 어의 표기	83개	6개
제20절	네덜란드 어의 표기	61개	12개
제21절	러시아 어의 표기	44개	10개
총계		800개	119개

[도표-3]과 같이 제3장 표기 세칙에 예시한 어휘가 총 800개 인데『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올림말은 119개뿐이다. 나머지는 해당 국가의 사전이 없으면 뜻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인명이나 지명을 제외한 일반 어휘

는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이면서 또 이들을 외래어로 인정해야 할지 외국어 음차표기라고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래어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라 반드시 따로 사정하도록 규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계로 '갭(gap), 북(book), 캣(cat), 앱트(apt), 액트(act), 케이프(cape)'와 같은 어형을 외래어로 인정할 수 있을까?

3.5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은 제1절 표기 원칙,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적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하느냐의 문제는 시각을 다툴 만큼 긴급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인명이나 지명 표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제1절 표기 원칙에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제3장에 제시된 국가의 인명, 지명표기는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에 따르지만 그 외의 국가는 원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4항은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놓고 제2절에서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는 예외 규정으로 설정하여 혼란을 불러온다.

제2절 제1항은 중국의 경우 신해혁명을 전후 하여 그 이전에는 한자음 명칭을 통용하도록 해놓았지만 그 이후의 경우 원음주의로 처리하여 제1절 표기 원칙의 제4항과 충돌된다. 제2항에는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 현재 쓰이지 않는 경우만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의 경우 중국어 표기법에 따르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인의 간도 개척 시대 조선인이 살던 중국 동북 3성의 지명도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한국식 한자음이 아닌 중국 원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은 가까이는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우리 민족의 삶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연변이나 동북 3성 지역의 조선족 소수 민족의 거주 현장에는 한자음으로 지명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곳의 지명을 원음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 데,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동북 3성의 소수 민족 정책의 원칙에 따라 우리 한자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명 표지판에 한글과 중국 한자를 병행 표기하도록 하는데 어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보다 앞질러서 중국 원음 중심으로 표기하도록 정해 놓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발해만(渤海灣)'은 '보하이만의 잘못'으로 '도문'은 '투먼의 잘못'으로 '연길'은 '옌지의 잘못'으로 처리하고 있다. '북경(北京)'은 '북경'과 '베이징'으로 표기하도록 하면서 동북 3성의 지명을 중국 원음표기를 고수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고대사와 현대사의 일부를 허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은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이다. 제1항은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는 붙여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해, 남해, 황해'는 붙여 쓰고 '카리브 해, 에게 해'는 띄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족(族), 양(洋), 도(道), 섬, 산(山), 시(市)' 등이 합성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조어의 기반을 국어 규범이 이를 억제시키고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어문 정책의 기반은 우리의 모국어의 기반을 절멸 위기로 내 몰아내는 꼴이 되게 한다. 이 규정은 「한글 맞춤법」제1장 총칙 제3항 띄어쓰기 규정과 함께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한글 맞춤법」제1장 총칙 제3항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세부 규정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와 같이 한자어로 복합된 말은 붙여 쓰지만 '키큐 어, 뱅갈 어, 바스크 어, 유키 어, 와포 어, 엘살바도르에서 사어로 알려졌던 '카코페라라 어'와 같이 원어와 한자어로 복합된 어

휘는 띄어 쓰도록 되어 있다.

'불어'는 붙여 쓰고 '프랑스 어'는 띄어 쓴다면 '불어'와 '프랑스어'가 전혀 다른 대상인가? 띄어쓰기를 한다는 것은 각각 다른 단어라는 의미이다. 국어 규범이 한 단위의 단어를 두 단어로 띄어 쓰도록 함으로써 국어의 어휘력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 기반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새롭게 생산되는 조어 양식을 국어 전문가와 같은 안목으로 고유어와 한자의 복합, 고유어와 외국어의 복합, 한자어와 외국어의 복합 양식으로 구분하여 띄어쓰기를 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5.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래어와 외국어 음차표기의 규범 및 정책 관리에 대안을 『표준국어대사전』의 관리 방안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곧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표준어'와 '사정한 외래어'를 제외한 '신조어'나 '개인어', '방언', '순화어', '전문용어'를 비롯한 새로 생겨나는 많은 언어 자료를 사전 표제어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규범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새로운 말이 널리 쓰이게 되면 우리말의 일부로 인정되고 또 국어사전에 올라갈 수 있지만 국어사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사전은 그 제목이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면 <한글 맞춤법>의 제1장 총칙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

박용찬(2006)의 "국어사전은 표준어 모음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어사전의 표제어는 모두 표준어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논의의 전제가 아주 왜곡되어 있다. 국어사전은 우리 국어의 모든 자산이 실려 있는 사전이어야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사전의 표제어는 표준어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국어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사전을 동일한 관점

에서 둔다는 것은 우리 모국어를 표준어로만 제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신조어를 '국어사전'의 올림말로 올릴 것인가 또는 『표준국어대사전』사전의 올림말로 올릴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곧 언어 자산으로서 처리하느냐 또는 규범적인 언어 자료로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다. 지금까지 사전 편찬자의 주관에 따라 임의로 올림말을 선정하던 관행이 『표준국어대사전』사전에 까지 미침으로 인해서 신조어 처리에 대한 정책 혼선이 야기된 것이다. 더군다나 외래어나 순화어와 전문용어를 제외한 신조어는 말 그대로 조잡하고 거친 어휘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단계의 여과 장치를 거쳐 정착된 어휘만 국어사전에 올리고 그 가운데 규범성이 보장되는 것만 엄격하게 심의하여 『표준국어대사전』사전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사전은 어문 규정을 철저하게 반영하여 국민들이 어문 사용의 거울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문 규정이 너무 어렵거나 일관성을 잃어버려 도리어 국민들의 어문 생활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국어의 띄어쓰기 규정은 새로운 어휘의 복합이나 합성의 관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대학의 연구실이나 연구소를 통한 연구 성과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각종 고전 국역 사업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한자 어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또 창작자들의 창작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국가 사전에 실리지 않은 어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분야별 전문용어가 정제되지 않은 채로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한글 표기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IT)산업 분야와 관련되는 전문 용어가 일상생활에서도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전에 정제해서 실어야 할 사전 지식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국가적 임무를 수행할 곳은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당위성마저도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늘어나는 다양한 사전 지식을 어느 개인이나 대학 연구 기관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사업으로 진행해 온 『표준국어대사전』사전이 담당할 수 있는 지식 지원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각종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어휘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정밀한 지적 통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 또 선택의 협소함으로 이루어진 낡은 언어로는 진화하는 언어 지식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생산되는 지식 영역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전 지식의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또 그 자료의 생산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이 주도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표준국어대사전』은 규범사전으로써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가 참여하고 다중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지식 능력을 고도화하는 일이야말로 비물질적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에 적응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름길이다. 기존의 『표준국어대사전』사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체계적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핵심어: 국어 기본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 『외래어 표기 용례집, 인명』, 2002.
국립국어연구원, 『외래어 표기 용례집, 지명』, 2002.
국립국어연구원, 『포르투갈, 네덜란드,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 (국립국어원 2005-1-26). 2005.
국립국어원, 『외래어 이렇게 다듬어 쓰자』, 2007. 태학사.
국어연구소, 『외래어 표기 용례집(일반용어)』, 1988.
국어연구소,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 1988.
국어연구소, 『표준국어대사전』, 1999.

김정섭, 「국어와 표준어와 외래어」『외솔회지』 제8집, 외솔회, 2007.
문교부, 『외래어 표기 용례, 일반 외래어』(편수자료 2-1), 1987.
문교부, 『외래어 표기 용례, 지명, 인명』(편수자료 2-2), 1987.
민현식,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1999.
안정효, 『가짜 영어사전』, 현암사, 2006.
윤병석, 『간도 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3.
이상규, 『둥지 밖의 언어』, 생각의 나무, 2008.
임홍빈,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한국 어문 규범의 이해』, 태학사, 2008.
國立國語研究所, 『公共媒體の外來語』, 日本 國立國語研究所, 2008.
하성수, 『교부학 인명·지명 용례집』, 분도출판사, 2008.
강신항, 『오늘날의 국어생활』, 박이정, 2007.

“Fundamental Law of languages” based on “foreign words notation” Analysis

Lee, Sang-gyu

This paper presents problems with foreign words that appear in the notation, and that ways to overcome the problems presented. Fundamental Law of languagesprovisions and language, particularly language based and foreign words that minimize the error between the provisions of conventions to which the ″Dictionary of the standard language″ would need to reflect on.

Key Word: Fundamental Law of languages, Romanization, foreign words notation.

본 논문은 2011년 07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1년 08월 08일 심사 완료하고, 2011년 08월 09일 게재를 확정하였음.